

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  
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 
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 접수 기간	2024.09.23(월) ~ 2024.09.28(토) 10:00~17:00
대상자	당첨자(전체) / 대상자 당사 별도 안내
제출 장소	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 견본주택 (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-1)

- \* 당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\*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8.30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\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52조 제 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■ 필요서류 확인\_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8.30) 이후 발행분에 한함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비치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)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전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
추가 서류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
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
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전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,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자촉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명시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직계존속	•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상 만 19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•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,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)
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비사업자 확인각서 "신고사실 없음" 사실증명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비사업자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 *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'신고사실 없음' 사실증명 첨부
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	부동산소유현황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특별과세증명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내역서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( <a href="http://www.irs.go.kr">www.irs.go.kr</a> ) > 등기 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·발급시(주민등록번호 공개예체크)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•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• 전국단위 발급
	해당 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•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*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 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'소형·저가주택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서 추가 사항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인감도장, 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추가 1통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)
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등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

- \*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- \*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.
- \*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- \*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" 주민등록번호 " 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"상세 " 발급을 원칙으로 함. 또한, 주민등록표등(초)본에 "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", "세대주와의 관계" 등이 포함되어야 함.